

미국장로교 연방 단체 면제에 포함되기 위한 절차

미국장로교는 국세청 (이하 "**IRS**")으로부터 단체 면제 결정 (이하 "**단체 면제**")을 받았다. 1964년 1월 31일에 처음 이 결정을 한 후, IRS는 이 결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검토를 해오고 있다. 이 단체 면제 결정으로 미국장로교와 그 산하 조직은 미국 연방세법(이하 "**법**") 501(c)(3) 조항에 따라 연방 소득세에서 제외된다. 미국장로교 총회는 매년 발행하는 회의록(이하 "**회의록**")에 단체 면제 결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관련 단체의 명단을 기재하고 있다. 미국장로교의 법률 및 위험 관리 서비스 사무소, A-코어퍼레이션의 행정 서비스 그룹은 미국장로교 총회 정서기를 대신하여 단체 면제 결정을 관리한다.

다음 목록은 단체 면제 결정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목록이다. 다음에 포함된 조직은 단체 면제 결정에 포함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 개별 교회, 회중, 당회,
- 노회,
- 대회,
- 총회,
- 위 조직의 최초 또는 주요 법인(예: 제일 장로교회, Inc.) 및
- 위 조직의 비법인 프로그램 또는 기능.

관련되어 있지만 별도로 설립된 다른 단체는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공의회가 만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법인. 일반적으로 캠프 및 컨퍼런스 센터, 캠퍼스 사역 법인 또는 법인 어린이집이 여기에 해당된다.

조직이 단체 면제 결정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단체 면제 결정 포함 신청/요구를 검토하는 책임은 총회사무국에게 있다.

단체 면제 결정을 적용받는 각 조직에 대한 세금 관련 문제로 인해, 단체 면제 결정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격이 없는 단체가 포함되면 단체 면제 결정에 포함된 모든 단체의 면제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단체 면제 결정에 포함되기 위한 신청자는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강령과 국세청에서 정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장로교 총회 사무국의 법률 및 위험 관리 서비스, A-코어퍼레이션의 행정 서비스 그룹("**법률 서비스**")은 모든 문서를 검토하는 데 있어 총회 사무국을 지원한다. 이 문서는 단체 면제 결정에 포함되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정 사실 상황에 대한 유능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음 조직은 단체 면제 결정에 포함되도록 신청해서는 **안된다**:

1. 외국에서 설립 또는 법인화된 조직;
2. 별도의 판결 요청을 제출한 후 IRS로부터 섹션 501(c)(3)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조직;
3. IRS가 501(c)(3)항 이외의 규정 섹션에 따라 분류한 조직;
4. IRS에서 독립적인 섹션 501(c)(3) 면제 결정서를 발급한 단체;
5. 개인 또는 영리 단체와 합작 투자에 참여하는 조직.

위의 제외 사항 외에도, 단체 면제 결정에 포함되기를 신청하는 단체는 미국장로교('교단') 공의회와 제후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제후 관계'란 교단 공의회가 단체 면제 결정 포함을 신청하는 조직의 프로그램을 관리 및 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기꺼이 인증할 의사가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조직의 이사회에 대한 통제권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단체 면제 결정 적용을 신청하는 조직은 규정 501(c)(3)항의 같은 단락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단체 면제 결정에 포함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직이 설립된 날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서비스 사무국(100 Witherspoon Street, Room #5629, Louisville, Kentucky 40202)에 신청해야 한다(Attention, April L. Davenport). 신청하는 각 조직은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보내야 한다:

1. 단체 면제에 포함되려면 해당 단체의 이사회의 적절한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해당 단체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임원이 서명해야 한다.
2. 조직의 주요 목적과 조직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3. 통일된 관리 문서(헌장, 신탁 계약서, 정관, 내규, 재무제표 등) 사본 및 단체의 정관 사본. 조직 이사회의 모든 의결권 있는 구성원이 교단의 회원, 사역 장로 또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임을 관리 문서 및/또는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공통 운영 기구가 위에서 설명한 대로 해당 단체가 교단 공의회와 제후 관계를 맺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4. 고용주 식별 번호(국세청에서 발급)를 제공해야 한다.
5. 조직의 관계를 인정하고, 조직의 프로그램 목적을 승인하며, 조직, 프로그램 및 재정 무결성에 대한 감독 책임을 해당 대회, 노회 또는 당회가 행사하는 데 동의하는 공동 운영 문서에 명시된 해당 대회, 노회 또는 당회의 정식 승인 조치.

서류가 검토되면 결정이 내려지고 해당 조직에 서한이 발송된다. 해당 조직이 포함되었다는 승인을 받으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무기한 보관되며, 해당 조직은 다음 해 *회의록*에 등재된다. 조직의 구조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조직 또는 공의회가 소속된 공의회와의 법적 제후를 해지하는 경우 총회 사무국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단체 면제 결정에 포함되면 대회, 노회 또는 당회(또는 적절한 권한을 가진 모든 조직)에 프로그램 재정을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총회 사무국은 법률 서비스와 함께 조직의 법적 문제 및 재정 문제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총회 사무국은 단독 재량에 따라 해당 조직의 포함이 단체 규정을 위태롭게 할 경우 단체 규정을 제외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단체 면제 결정에 관해 일반적으로 묻는 질문과 답변이다:

1. **단체 면제 결정에 포함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단체 면제 결정에 포함된다는 것은 포함된 조직이 규정 501(c)(3)항에 따라 연방 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연방 소득세, 증여세 및 상속세 목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조직은 연방 실업세도 면제된다. 그러나 개별 주에서는 특정 면제 기관에 대해 연방 세금이 면제되더라도 실업세를 부과할 수 있다. 기관들은 주 실업세에 대한 책임 유무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2. **연방 소비세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단체 면제 결정에 포함되는 것은 연방 소비세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세금 면제는 매우 제한적이다. 조직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주세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단체 면제 결정에 포함되는 것은 주 또는 시 소득세나 재산세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해당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 또는 지방 세무 당국에 별도의 면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직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세 또는 지방세 면제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가능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4. **사회보장세는 어떻게 되나요?** 단체 면제 결정에 포함된 모든 조직은 각 일반 직원에 대해 연방보험기여금법(FICA)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5. **대회, 노회 또는 총회 사무국의 불리한 결정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단체 면제 결정 포함이 거부된 조직은 규정 501(c)(3)항에 따라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단체가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단체는 연방 소득세의 대상이 되고, 기부금은 연방 소득세의 대상이 되며,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든 단체 면제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가 섹션 501(c)(3)에 따라 독립 면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양식 1023, 섹션 501(c)(3)에 따른 면세 인정 신청서를 IRS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6. **새로 승인된 단체가 단체 면제 결정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어떻게 통지하나요?** 전년도에 단체 면제 결정에 추가되거나 단체 면제 결정에서 제외된 조직에 대해 법률 서비스팀이 IRS에 통지한다.

총회사무국과 법률 서비스팀은 문서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에 관한 질문은 다음 주소로 문의하면 된다:

Rebecca Rayner, Legal Services
(888) 728-Ext. 8021
rebecca.rayner@pcusa.org

또는

April Davenport, Legal Services
(888) 728-7228-Ext. 5350
April.Davenport@pcusa.org

g:\becky\groupinclusionprocedures.rev.03/23